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121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정천수, 조함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이지은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06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는 9,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하였다가 반환하여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데, I 명의로 2015. 4. 8.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5. 4. 14. H 명의를 사용하여 C의 계좌로 보이는 일본 계좌로 송금된 1,650만 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을 제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4. 8. I 명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 1,65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는데 피고는 5일(영업일 기준 3일) 후인 2015. 4. 13. 이 사건 송금액을 인출하여 H 명의로 대체 입금한 사실, H은 같은 날

1,600만 원 상당을 일화 180만 엔(¥)으로 환전하여 'Q 은행, Namba Points 大阪 Osaka 지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신청하여 다음날인 2015. 6. 14. 위 계좌로 일화 180만 엔의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대부분을 일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남편인 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를 증여(무상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

목록

순번	날 짜	금액(원)	입출금명
1	2015. 4. 2.	2,000,000	H
2	2015. 4. 8.	16,500,000	I
3	2015. 5. 4.	3,000,000	H
4	2015. 5. 29.	1,000,000	J
5	2015. 6. 9.	1,000,000	J
6	2015. 6. 19.	2,500,000	J
7	2015. 6. 19.	3,000,000	J
8	2015. 8. 3.	200,000	J
9	2015. 8. 17.	300,000	J
10	2015. 8. 28.	4,000,000	K
11	2015. 11. 23.	5,000,000	L
12	2015. 12. 14.	3,000,000	G
13	2016. 2. 3.	5,000,000	M
14	2016. 2. 5.	2,000,000	H
15	2016. 2. 27.	1,000,000	받으시용
16	2016. 6. 13.	1,000,000	H
17	2016. 11. 28.	4,400,000	N
18	2016. 12. 1.	3,000,000	O
19	2016. 12. 1.	2,000,000	H
20	2017. 5. 19.	9,800,000	돈많이벌어쑈
21	2017. 9. 11.	2,000,000	P
22	2017. 11. 17.	10,000,000	P
23	2018. 1. 24.	5,000,000	H
24	2018. 2. 1.	1,200,000	H
25	2018. 4. 2.	1,000,000	H
26	2018. 4. 5.	2,926,800	H
27	2018. 5. 31.	2,000,000	H
합 계		93,826,800	

